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유

1. 운용전문인력 변경 (정인기, 안홍익 → 안홍익, 조상현)
2. Cp클래스(퇴직연금클래스)의 환매수수료 삭제
3. 자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
4. 반기 기준으로 재무제표 기재

□ 효력발생일 : 2015년 5월 27일

□ 변경 내용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안내 | <신설> | <u>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u> |
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| 정인기, 안홍익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안홍익, 조상현 <u>2015.04.30</u> |
| 5. 운용전문인력 나.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| 정인기 : 2012.7.2 ~ <u>현재</u> | <u>정인기 : 2012. 7. 2 ~2015. 5. 26</u> <u>안홍익 2015. 5. 27~현재</u>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| 11)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 법 시행령 제268조 <u>제3항</u> 의 규정에 의한 거래 | 11)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 법 시행령 제268조 <u>제4항</u> 의 규정에 의한 거래 |
|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| Cp클래스 환매수수료 -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-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 | Cp클래스 환매수수료 : <u>환매수수료 없음</u>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| Cp클래스 환매수수료 | Cp클래스 환매수수료 : <u>환매수수료</u> |

| | | |
|--|---|--|
| 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| -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-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 | 없음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| 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 인 14%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기 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 득)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 른 종합소득(부동산임대소득, 과세소 득, 기타소득)과 합산하여 개인소득 세율(최고한도 세율 35%, 주민세 3.5%)로 종합과세 됩니다.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 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 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이 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 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 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 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 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 게 됩니다. |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기 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 득)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 른 종합소득(부동산임대소득, 과세소 득, 기타소득)과 합산하여 개인소득 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 익은 15.4% 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 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 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 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 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 게 됩니다. |
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재무정보 | 반기 기준으로 기재 | <u>기준일 : 2014.12.26</u>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| 반기 기준으로 기재 | <u>기준일 : 2014.12.26</u>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 적 | 반기 기준으로 기재 | <u>기준일 : 2014.12.26</u> |
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| | | |
|---|--|--|
|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 | | 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 | | 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.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| | <p>③회계감사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</p> <p>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|